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675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합5030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1]가 2022. 8.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

1) 당초 처분청은 ○○시장이었으나, ○○시의 2024. 1. 1.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처분청이 ○○구청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2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7 내지 27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14호증"을 "14, 2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21621) 감정서(갑 제23호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이 공부상 구조, 용도, 면적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 전부가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거나, 이 사건 각 주택의 공부상 기재와 실제 현황의 차이가 사회관념상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각 주택이 철거된 후 다시 건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송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전

으로 변경되었다(피고의 2024. 1. 9.자 법원 제출 의견서 참조). 이하 ○○시장과 ○○구청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2

단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으로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완벽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의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철거대집행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취득세, 재산세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러 건축법 제79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을 위반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그 해체, 사용금지 내지 나아가 철거대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 조문 내용[2]에 따르더라도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2

법 제2조의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 할 수 있다'라는 문언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1필지였으나 1986년경 환지처분에 따라 현재와 같은 2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주택도 종전 토지 위에 건립된 것으로서 구조상, 기능상 분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1주택이,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2주택이 각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이 구조상, 기능상 분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1필지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점, ⑦ 원고는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12027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41845 판결을 들면서,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면서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사건은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한 사안이고, '원고가 자신의 건축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속토지를 취득'한 사안인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2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판사 김○○

판사 최○○